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세입예산

○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6억 2천 2백만원) 대비 5.4%(3천 4백만원) 증액된 6억 5천 6백만원 수준임.

※ 2021년도 당초·최종 세입예산은 같음.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내비증감	증감된	量(%)		
	구 분	당초	최종	2022인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622,370	622,370	655,936	33,566	33,566	5.4	5.4
	세외수입	6,916	6,916	6,392	△524	△524	△7.6	△7.6
	경상적세외수입	563	563	534	△29	△29	△5.2	△5.2
	이자수입	563	563	534	△29	△29	△5.2	△5.2
	기타이자수입	563	563	534	△29	△29	△5.2	△5.2
	임시적세외수입	6,353	6,353	5,858	△495	△495	△7.8	△7.8
	보조금반환수입	6,353	6,353	5,858	△495	△495	△7.8	△7.8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6,353	6,353	5,858	△495	△495	△7.8	△7.8
보	조금	615,454	615,454	649,544	34,090	34,090	5.5	5.5
	국고보조금등	615,454	615,454	649,544	34,090	34,090	5.5	5.5
	국고보조금등	615,454	615,454	649,544	34,090	34,090	5.5	5.5

2. 세출예산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30억 1천 8백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억 9천만원 대비 2.3% 감액된 수준이며,
 2021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9억 2천 4백만원 대비 3.2%가 증액된 수준임.

	구 분	2021년도 구 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1 记	당초	최종	2022 11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3,090,219	2,923,795	3,017,718	△72,501	93,923	△2.3%	3.2%
	소 계	3,090,219	2,923,795	3,017,718	△72,501	93,923	△2.3%	3.2%
해정관리	행정운영경비	147,716	147,716	147,716	0	0	0.0%	0.0%
관리	재무활동	О	3,076	0	0	△3,076	0.0%	△100%
	사 업 비	2,942,503	2,773,003	2,870,002	△72,501	96,999	△2.5%	3.5%
الد	고 부 금	0	0	0	0	0	0	0

○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27, 24,	
정책/ነ		2021	예산	2022 예산	2021년 및	개비증감	증지	구를
세부시	세부사업별		최종	2022 기간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3,090,219	2,923,795	3,017,718	△72,501	93,923	△2.3%	3.2%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2,942,503	2,773,003	2,870,002	△72,501	96,999	△2.5%	3.5%
내실있는 비상대비	ෆ් ය	174,174	174,174	174,988	814	814	0.5%	0.5%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102,350	102,350	101,604	△746	△746	△0.7%	△0.7%
서울인전통합센E 리	l 충무시설 유지관	71,824	71,824	73,384	1,560	1,560	2.2%	2.2%
실효성 있는 동원	사원관리	6,805	6,805	38,305	31,500	31,500	462.9%	462.9%
인력동원실제훈련	¹ 및 자원관리	6,805	6,805	38,305	31,500	31,500	462.9%	462.9%
완 벽 한 통합방위태	세 확립	588,240	483,240	583,020	△5,220	99,780	△0.9%	20.6%
통합방위협의회 -	등 운영	80,240	70,240	79,720	△520	9,480	△0.6%	13.5%
예비군 육성·자	원	350,000	350,000	350,000	0	0	0.0%	0.0%
예비군의 날등 여	간보행사 실시	18,000	3,000	18,200	200	15,200	1.1%	506.7%
시민 안보의식 힘	l양 지원	140,000	60,000	135,100	△4,900	75,100	△3.5%	125.2%
시회복무요원관	뵈	592,649	592,649	461,941	△130,708	△130,708	△22.1%	△22.1%
사회복무요원 관	믜	592,649	592,649	461,941	△130,708	△130,708	△22.1%	△22.1%
민병위 교육훈련	. 강화	891,922	827,422	869,472	△22,450	42,050	△2.5%	5.1%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 경비	0	0	0	0	0	0	0
민빙위교육운영비]	610,195	610,195	564,127	△46,068	△46,068	△7.5%	△7.5%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30,875	0	0	0.0%	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시추진	91,343	50,843	114,260	22,917	63,417	25.1%	124.7%
민방위교육장 운	경	159,509	135,509	160,210	701	24,701	0.4%	18.2%
민병위 시설 및	장비 관리	688,713	688,713	742,276	53,563	53,563	7.8%	7.8%
민방위 장비 보급	구·확충	14,130	14,130	14,731	601	601	4.3%	4.3%
지역민방위대 방	독면 확충	674,583	674,583	727,545	52,962	52,962	7.9%	7.9%
행정 운영 경비		147,716	147,716	147,716	0	0	0.0%	0.0%
기본경비		147,716	147,716	147,716	0	0	0.0%	0.0%
재무활동		0	3,076	0	0	△3,076	0.0%	0.0%
보존지출(빈환금	및 기타)	0	3,076	0	0	△3,076	0.0%	0.0%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6억 2천 2백만원) 대비 5.4%(3천 4백만원) 증액된 6억 5천 6백만원 수준임.
- ※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5.5%(3천 4백만원) 증액에 따른 것임.
- ※ 비상기획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최종예산이 같음.

세외수입

○ 202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 과목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당초예산(6백 9십 2만원) 대비 7.6%(52만원) 감액된 6백 3십 9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자치구에 보조한 2021년도 시비보조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반환에 따른 세입과목으로, 시비보조금 사업 교부액에 최근 4년간 결산 반환률(0.8%)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액(6백 3십 5만원) 대비 7.8%(50만원) 감액된 5백 8십 6만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 관련 사업: 민방위교육운영비,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최근 3년간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2021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	18	20	19	20	20	202	:1	2022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요구액
18,350	16,407	17,332	10,365	13,264	4,977	6,353	133,062	5,858
(결산률)	89.4	59	.8	37	.5	2,094	4.5	전년대비 △7.8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반환금이 평균보다 이례 적으로 많아 이를 제외하여 산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과목구분 목	설 정
20	00 /	네오	수입	
	22	20 9	임시적세외수입	
		22	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 금등(위탁비 포함)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한편, 비상기획관은 2020년도 시비보조사업(7억 4천 8백만원)에 대한 2021년도 '시도비보조등금반환수입'의 과다한 초과세입(1억 3천 3백만원, 예산대비 2,094.5% 초과) 발생(전망)에 대하여,
 - 2020년도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비보조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배제하여 2022년 본 세입과목 예산을 추계하였음.

〈최근 5년간 시비보조금 교부 및 반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시행년도 보조금	4,076,862	733,870	733,981	783,584	1,077,911	747,516
다음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186,952	22,141	16,407	10,365	4,977	133,062
반환율(%)	1.7(평균)	3.0	2.2	1.3	0.4	17.8

- 다만, 사업추진 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시비보조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2020년, 7억 4천 8백만원) 대비 0.2%(138만원) 감액 편성(7억 4천 6백만원)하여 예년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최근 5년간 비상기획관 시비보조금 편성 규모) (단위 : 천원)

(*) L O L L O T L T L O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783,584	1,077,911	747,516	746,134	751,039			
전년대비 증감액	49,603	294,327	-330,395	-1,382	4,905			
전년대비 증감률	6.8	37.6	-30.7	-0.2	0.7			

- 이에 대한 2022년 '시비보조금반환수입'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초과세입의 발생이 예견된다고 할 것인바, 전년도 수준(6백 3십 5만원)의 보수적인 세입편성(5백 8십 6만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시비보조금 사업별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フ 日	사 업 명	예산	핵
구 분	사 업 명	2021년	2022년
시비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25,000	25,000
보조금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14,130	14,731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x0) 6,805	(x31,500) 38,305
국비.	민방위교육운영비	(x289,858) 610,195	(x268,004) 564,127
시비 매칭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x14,250) 30,875	(x14,250) 30,875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x311,346) 674,583	(x335,790) 727,545
그/기네 기범	시비 총액	746,134	751,039
국/시비 구분	국비 총액	615,454	649,544

○ 따라서 본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예산의 편성은 근본적으로는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보조사업 규모 파악을 통한 시비보조금 집행을 통하여,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 및 이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되는 세입과목이라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기준으로 전년 당초예산(6억 1천 3백만원) 대비 0.4%(229만원) 증액된 6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국고보조금 2020년 예산은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음.

〈비상기획관 2022년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편성 내역〉

예산과목	(계 산 액	. 세 입 내 용	
메산파득	2021 최종예산	2022예산(안)	증 감	세 십 내 용
보조금	615,454	649,544	34,090	
국고보조금 등	615,454	649,544	34,090	○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1,500 ○ 민방위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268,004 ○ 민방위대교육훈련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35,79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u> </u>		<u> </u>	설 정	
장	장 관 항 목		목	≥ 0
500 보조금			급	
	51	.0 =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E11 01 그ㄱㅂㄱ그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
			511-01 국고보조금	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3천 2백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2억 6천 8백만원)",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1천 4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3억 3천 6백만원)" 등 4개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대부분 국가사무를 운영하고 있는 2022년 비상기획관 14개 세출 예산액(30억 1천 8백만원)의 21.5%(6억 5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 세입예산(6억 5천 6백만원)의 99.0%(6억 5천만원) 수준임.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법」

-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 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비상기획관 2022년 세출예산 사업>

연번	^업명	근거법령	국비(천원)
1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0
2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국가전쟁지도지침	0
3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비상대비지원관리법	31,500
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법	0
5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법	0
6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국가보훈법	0
7	시민안보의식 함양	재향군인회법	0
8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법	0
9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기본법	268,004
10	민방위대교육훈련-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기본법	14,250
1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시추진	민방위기본법	0
12	민방위 교육장 운영	민방위기본법	0
13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민방위기본법	0
1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기본법	335,790

- 이처럼 국가사무 수행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비상기획관 세출예산의 21.5%, 6억 5천만원)가 미미한 것은.
-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는 거리가 먼 국고보조금 운영 행태로써,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u>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u>은 법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자의적 운영의 원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사무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지방자치의 일반법인 「지방자치법」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고 하겠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발췌)>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 준 보 조 율 (%)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u>30</u>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이하 생략)		

○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 대비 등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 하고 있는 제도 운영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30억 9천만원) 대비 2.3%(7천 3백만원) 감액된 30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3.2%(9천 4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전년 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3천 2백 만원, 462.9% 증액)와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2천 3백만원, 25.1% 증액) 등 2개 사업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관리"(△1억 3천 1백만원, △22.1% 감액) 사업임.

가.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 본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을 통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1억 2백만원) 대비 0.7%(7십만원) 감액된 1억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1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예산펴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	1년	2022예산(안)	2022예산(안) 증감 (B-A) _[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A)	(B)	등점 (D-A)	(B-A)*100/A
계	(x-)	(x-)	(x-)	(_X -)	(x-)
	102,350	102,350	101,604	△746	△1
기간제근로자등	(x-)	(x-)	(x-)	(_X -)	(_X -)
보수	7,373	7,373	7,416	43	
사무관리비	(x-)	(x-)	(x-)	(_X -)	(x-)
	33,044	33,044	29,233	△3,811	△12
공공운영비	(x-)	(x-)	(_X -)	(x-)	(_X -)
	36,983	36,983	40,005	3,022	8
시책추진업무추	(x-)	(x-)	(_X -)	(X-)	(X-)
진비	3,350	3,350	3,350	0	0
특정업무경비	(x-) 21,600	(x-) 21,600	(_X -) 21,600	(x-) 0	(_X -)

○ 기존 을지연습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방침¹) 시행 이후 을지태국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정이 축소되거나 유예·취소되는 등 예산 편성 규모도 매년 감액 편성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을지태극연습 예산 집행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10월말기준)	2020년	2019년	2018년
	편성액	101,604	102,350	당초 227,608 현액 95,608	293,873	291,834
예	집 행 액		90,155(예상)	93,350	227,835	76,622
산	집행잔액		12,195 (예상)	2,258	66,038	215,212
	불용률		11.9%(예상)	2.4%	22.5%	73.7%
	불용사유		사무관리비 : 7,594천원 을지태극 준비비, 장비임차금 및 급량비 (내부직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집행진액발생) 공공운영비 : 4,601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을지태극 급량비 및 준비비 집행잔액	전시대비 훈련기간 축소 (2박3일→1박2 일)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을지연습 유예(미실시)

- 다만, 본 사업예산이 급격한 수준(2018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액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액 편성되고 있는바, 주된 사업비의 감소만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감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이> (단위:천원,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305,834	293,873	233,244	102,350	101,604
증감률		-3.9	-20.6	-55.0	-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	3,300	3,300	3,350	3,350
전년 대비 증감률		0.0	0.0	1.5	0.0

^{1)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 또한, 을지태국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2)」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한 법률 규정 사항에 반하는 것인바,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다고 하겠음.

나.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 본 사업은 전시대비 업무추진의 일활으로 유사시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7백만원) 대비 426.9%(3천 2백만원) 증액된 3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당초 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 u	2021년		2022예산(안)	7.1 (7.1)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A)	(B)	증감 (B-A)	(B-A)*100/ A
계	(_X -) 6,805	(_X -) 6,805	(x31,500) 38,305	(x31,500) 31,500	(x100) 463
사무관리비	(_X -) 6,805	(_X -) 6,805	(_X -) 6,805	(x-)	(x-)
행사실비지원금	(x-)	(x-) 0	(x31,500) 31,500	(x31,500) 31,500	(x100) 100

○ 주요 증액 사유는 '행사실비지원금'(3천 2백만원)의 순증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대상자(450명)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임.

²⁾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 한편, 본 증액 예산이 전년도(2021년)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3년마다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충무훈련이 2021년도에 이행되면서, 인력동원 대상 자에 대한 실비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직접 지급(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체)함에 따른 것으로,
- 2021년도 충무훈련 시 실제 인력동원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2021년도 충무훈련 계획(2021.10.. 비싱기획관)

일반사항

□ 기 간 : 2021. 11. 1(월) ~ 4(목), 4일간

□ 대 상 : 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 31개 기관

□ 평가분야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동원훈련 미실시 및 실제훈련 축소

○ 계획 및 현장점검 : 8개 분야(직전 충무훈련 후속조치 결과 등)

○ **실제훈련 : 1건**(민·관·군 합동 교량 긴급복구훈련)

- 2022년 예산에 국고보고조금(3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의 인력동원 훈련 실시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는지 행정안전 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충무훈련: 3년 주기로 시도단체장 책임하에 자원동원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훈련(중점 관리 대상 자원: 인력, 차량, 건설장비, 중정관리대상 업체 등)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인력동원 실무교육(교재, 현수막 등) 2,000,000원*1회 = 2,000천원	○ 인력동원 실무교육(교재, 현수막 등) 2,000,000원*1회 = 2,000천원
사무관리비	○ 인력동원 실제훈련(훈련장사용, 통지서인쇄등) 1,815,000원*1회	○ 인력동원 실제훈련(훈련장사용, 통지서인쇄등) 1,815,000원*1회
	= 1,815천원	= 1,815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시범식 교육(교재 등) 2,990,000원*1회 = 2,990천원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시범식 교육(교재 등) 2,990,000원*1회 = 2,990천원		
		○ <mark>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mark> 70,000원*450명 = 31,500천원		
	증감사유			
행사실비지원금		_		

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본 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8천만원) 대비 0.6%(52만원) 감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최종예산(7천만원) 대비 13.5%(9백 4십 8만원) 증액된 수준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7 H	2021년		 2022예산(안	7-1 (D A)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A)) (B)	증감 (B-A)	(B-A)*100/ A
계	(x-)	(x-)	(x-)	(_X -)	(x-)
	80,240	70,240	79,720	9,480	13
사무관리비	(_X -)	(_X -)	(x-)	(x-)	(x-)
	56,790	56,790	56,270	△520	△ l
국외업무여비	(x-)	(x-)	(_X -)	(_X -)	(x-)
	10,000	0	10,000	10,000	100
시책추진	(x-)	(_X -)	(x-)	(x-)	(x-)
업무추진비	13,450	13,450	13,450	0	0

○ 다만,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상황이긴 하지만,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전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고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 ※ 외교부는 지난 11월 13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당초 10월 13일까지 였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까지 연장하였음. 이는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고 함. 또한, 외교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화할 예정임.3)
-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체)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는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국외업무여비'는 해외방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25,000	18,834	6,166	24.7%
2020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25,000 (20년 제2회 전액 감액)	0	0	0

³⁾ 외교부 보도자료,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2021년 11월 13일자 참조.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10,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0	0	0

라. 예비군 육성 지원

- 본 사업은 민·관·군·경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1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7 H	2021년		2022예산(안	77 (D A)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A)) (B)	증감 (B-A)	(B-A)*100/ A
계	(_X -) 350,000	(x-) 350,000	(x-) 350,000	(_X -)	(X-)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	(_X -) 350,000	(x-) 350,000	(x-) 350,000	(_X -)	(X-)

(단위 : 천원)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서 두 기 군	2021전 근에진	2022년 예간(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 교보재창고(컨테이너) 13,000,000원*8동	○ 교보재창고(컨테이너) 10,000,000*3동 = 30,000천원 ○ 예비군 야외쉼터 7,000,000원*8동 = 56,000천원 ○ LED전광판 100,000,000원*2개 = 200,000천원 ○ 방역 체계 시스템 2,000,000원*32대
		= 64,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증감사유					
	- 교보재창고, 예비군쉼터, 흡연실 설치 감소(감 264,000천원) - 훈련장 LED 전광판(2대) 설치(증 200,000천원) - 방역체계 시스템(소독방역기 32대) 구매(증 64,000천원)					

○ 비상기획관은 본 보조금을 통해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에 쉼터, 화장실, 흡연실,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 등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 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 운영 및 유지
-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 수송 · 통신 · 의료 · 장비 ·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군훈련장(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에 매년 연속하여 흡연실 28동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설치 건수 감소에도 구입비용이 더 크게 책정되는 등 보조금 사용에 계획성이 없어 보이는바.

- 근거 법·령에 따라 급식이나 수송 등 직접 지역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보조금 활용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수방사 지원 물품 내역 및 정산결과〉

(2021. 9. 30. 단위 : 천원)

년 도	물 품 명	구입비용	설치장소(예비군훈련대)
	친환경 탄두회수대(100대)	150,584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영상 모의사격 보조장비(32세트)	59,984	금곡
2017	야외 이동식 화장실(12동)	65,962	서초, 노고산, 금곡
2017	대형 정수기(9대)	70,470	서초, 노고산, 금곡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3동)	40,681	금곡
	영상모의 사격 보조장비(20세트)	37,963	금곡
	야외 이동식 화장실(9동)	164,207	서초, 박달, 금곡
2018	훈련장 대형 정수기(12대)	106,705	서초, 금곡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10동)	114,702	서초, 박달, 금곡
	예비군 야외쉼터(12동)	90,268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예비군훈련장 흡연실(10동)	144,711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2019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2동)	21,231	노고산
	예비군 야외쉼터(17동)	115,246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예비군훈련장 흡연실(10동)	143,485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2020	야외 이동식 화장실(2동)	40,575	서초
	대형정수기(2대)	9,936	금곡
	제습기(35대)	19,333	서울시 예비군 동대
	교보재 창고 컨테이너(8동)	54,000	박달, 노고산
2021	예비군 야외쉼터(15동)	136,000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예비군훈련장 흡연실(8동)	160,000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 출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쪽

〈 정산결과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결산액)	반환액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2017	347,000	347,000	О
	2018	350,000	349,555	445
	2019	350,000	349,681	319
	2020	350,000	349,806	194
	2021	350,000	사업진	l행 중

※ 출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

마.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본 사업은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여군창설 기념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지방보조금을 서울특별시재향 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1억 4천만원) 대비 73.5%(4천 9백만원) 감액된 1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1년도 최종예산(6천만원) 대비 125.2%(7천 5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필(재정담당관-3424, 2021.10.29.)

□ 예산(안) 총괄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증감 (B-A) [
丁 正	본예산	최종예산 (A)	(B)	중在 (D-A)	(B-A)*100/A
계	(x-) 140,000	(x-) 60,000	(x-) 135,100	(x-) 75,100	(x-) 125
민간경상사업보 조	(x-) 60,000	(x-) 60,000	(x-) 60,000	(X-)	(X-)
민간행사사업보 조	(x-) 80,000	(x-) 0	(_X -) 40,000	(x-) 40,000	(x-) 100
시설비	(_X -)	(_X -)	(x-) 35,100	(_X -) 35,100	(x-) 1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40,000천원 - 버스임대료	○전후세대 안보견학 = 40,000천원 - 버스임대료
	500,000원*23대 = 11,500천원 - 이용료, 체험비 등	500,000원*23대 = 11,500천원 - 이용료, 체험비 등
	12,000원*970명 = 11,640천원 - 식비(중식,간식)/도서구입비	12,000원*970명 = 11,640천원 - 식비(중식,간식)/도서구입비
	13,500원*970명 = 13,095천원	13,500원*970명 = 13,095천원
	- 안전요원 인건비 100,000원*23명 = 2,300천원	- 안전요원 인건비 100,000원*23명 = 2,300천원
	- 기타 행정비 현수막 등	- 기타 행정비 현수막 등
	= 1,465천원 C6.25전쟁 기념행사 = 18,000천원	= 1,465천원 C6.25전쟁 기념행사 = 18,000천원
	- 행사장 대관료 4,300,000원	- 행사장 대관료 4,300,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4,300천원 - 강사료/인건비(안보강사, 행사보조요원 등)	= 4,300천원 - 강사료/인건비(안보강사, 행사보조요원 등)
	930,000원 = 930천원 - 참전용사 위문품	930,000원 = 930천원 - 참전용사 위문품
	10,000원*1,000명 = 10,000천원	10,000원*1,000명 = 10,00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2,770,000 = 2,77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2,770,000 = 2,770천원
	○ 나라사랑 안보포럼= 2,000천원	○ 나라사랑 안보포럼= 2,000천원
	- 강사료 360,000원*1명*2회 = 720천원	- 강사료 360,000원*1명*2회 = 720천원
	- 대관료 500,000원*2회	-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280,000원	= 1,00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280,000원
	= 280천원	= 280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 C여군창설 기념행사 = 80,000천원	○ 여군창설 기념행사 = 40,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행사장 대관료 15,200,000원 = 15,200천원	
		- 공연료/인건비 4,800,000원 = 4,800천원	
		- 참석자 기념품 20,000원*380명	
		= 7,60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팜플렛 등) 3,000,000원	
		= 3,000천원 - 우수근무자/예비역 안보현장견학 9,400,000원	
	 증감	= 9,400천원 ·사유	
	여군창설기념행사 규모 축소(80,000원	' ''	
		○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 2,700,000원*13개소 = 35,100천원	
시설비	 증감	- 사유	
 ○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13개소 설치(0원 → 35,100천원) -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반영(개당 2,700천원) ※ 안내표지판 소요는 26개소이나 예산 고려 50%인 13개소는 			

- 한편, 본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예산 편성액 또한 지속 감소*
 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당초예산(2억 7천 8백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47.5%, 132백만원)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1억 4천 6백만원) 대비 16.6%(2,422만원) 지출하는데 그친바 있고(83.3%, 1억 1천 2백만원 불용).
- 금년 예산(6천만원**)의 집행 실적 또한 10월 말 현재 22.7%(1천 4백만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 2022년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6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 * 예산액 추이: 2019년 2억 2천만원, 2020년 2억 2천 8백만원(추가경정예산 1억 4천 6백만원), 2021년 6천만원, 2022년 6천만원

-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4천만원), 6.25전쟁 기념행사(18백만원), 나라사랑 안보포럼 (2백만원)
- 본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사업의 2020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율'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70%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20년도 사업 정산 검토결과				
잘된 점	보완할 점			
○ '코로나 19 지침' 준수	○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비율' 미달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참여 인원을 80명으로 축소(4㎡당 1명)	- 집행액 1,544천원(인건비 제외) 중 전용카드(제로페이) 결제액이			
-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코로나 행동지침 제작 배포	1,049천원(68%)으로 사용률이 70%(공약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참)에 미달			
- 체온계, 손소독제 비치				

※ 출처 : 20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 한편, 본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여군창설 기념행사)은 2021년 신규 편성(8천만원)하였다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된바 있고, 금년도에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0%(4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추경 대상 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추경액	주 요 내 용
시민 안보의식 함양	민간행사 사업보조 (여군창설 기념행사)	80,000	△80,000	 ○ 여군창설 71주년 기념 행사비 - 감추경액: △80,000천원 - 사 유: 코로나19로 인해 여군창설기념행사 취소로 감조정

-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군창설기념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편성된 취지와 현재 위드코로나 중단이 논의되고 있는 등 대규모 행사의 추진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여군창설기념행사' 개최의 보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 (단위 : 천원)

추경 대상 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추경액	주 요 내 용
	계	140,000	△80,000	· ○ 여군창설 71주년 기념 행사비
시민 안보의식 함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_	- 감추경액 : △80,000천원 - 사 유 : 코로나19로 인해
	민간행사 사업보조	80,000	△80,000	여군창설기념행사 취소로 감조정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二룹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二룹	편 성 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04. 민간행사사업보조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	
		를 제외한 보조금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 <u>차</u> 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2021}년도 최종예산(6천만원) 대비 125.2%(7천 5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다음으로, 2020년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791만원)은 한강대교 탄흔 등 사라져가는 6·25 상흔 발굴사업에 대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2021년까지 계획한 사업으로,
- 유적지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문안 감수 및 번역료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본 예산안에서는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26개소)를 위한 시설비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바, 시비를 통한 설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재향군인회에 위탁 후 31년간, 이를 서울시가 이어받아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한 때부터는 11년간 줄곧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에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본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 제·개정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다변화 모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1990년부터 정부주관으로 재향군인회에 위탁, 2011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하여 추진, 2016년부터 현재 사업명(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보조사업자 지정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2007.1.2. 제정)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